4. 금융투자협회 규정
  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CD수익률 제출기관 선정기준을 변경)
   나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K-OTC시장 호가단위 변경)
   다.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(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업계 정착 지원을 위한 개정)
   라.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(적격거래의 정의 신설 및 실적 산정방법 기준 마련)
   마.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(펀드재산 가치평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(2022/12/1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「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중요지표로 지정된 CD수익률의 산출 및 관리체계 개편을 위하여 제출기관 선정기준을 변경하기 위함

— 금융위원회, 금융투자협회가 산출중인 CD수익률을 지표법에 따른 중요지표로지정(2021.4), 지정 효력은 중요지표 산출기관 심사 완료후 발생 예정

— CD수익률 Waterfall방식의 산출방법론 도입 및 제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

2) 주요 내용

□ 최종호가수익률의 발표 등(제51조 제1항)

— 'CD수익률' 보고회사 지정을 '매 6월마다'에서 '매 1년마다'로 변경

나. K-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(2022/12/27 개정 · 2023/1/25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K-OTC시장내 가격발견기능 제고 및 거래비용 경감 등을 위해 K-OTC시장 및 K-OTCBB 호가단위 변경 추진을 위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2) 주요 내용

□ 호가가격단위 변경 내용

주식가격		호가가격단위
기존	개정	
~1천원	~2천원	1원
1천원~5천원	2천원~5천원	5원
5천원~1만원	5천원~2만원	10원
1만원~5만원	2만원~5만원	50원
5만원~10만원	5만원~20만원	100원
10만원~50만원	20만원~50만원	500원
50만원~	50만원~	1,000원

□ 적용대상

— K-OTC시장 및 K-OTCBB 모두 동일하게 변경

다.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(2022/12/19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성과연동형 운용보수의 원활한 업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'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'을 개정

—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대칭적으로 운용보수가 결정되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

• 자본시장법 시행령, 금융투자업 규정 등 개정(2022. 8. 30)

2) 주요 내용

□ 운영지침 마련 근거, 공통 용어 정의 등(제1장 총칙)

— 별도성과보수방식과 성과연동형운용보수방식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정의

□ 별도성과보수 산정 및 운영 관련 사항 규정(제2장 별도성과보수방식)

— 신규방식 도입에 따른 용어변경 이외에는 기존 가이드라인 내용과 대동소이

□ 운용보수 구성요소 규정(제3장 성과연동형운용보수방식)

— 기본 운용보수 및 성과운용보수 상한 및 설정기준,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최소기간 등 규정

라.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 (2022/12/1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□ CD수익률의 산출 및 관리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, 실거래기반 산출방법론 도입을 위해 '적격거래' 기준 마련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

—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2022. 11. 25 개정, 2022. 12. 1 시행) 사항 반영

— CD수익률 제출기관 선정 주기 변경

2) 주요 내용

□ 수익률 보고회사 지정(제3조 제4항)

— 'CD수익률' 보고회사 지정을 '매 6월마다'에서 '매 1년마다'로 변경하고 선정시 실적 산정기간도 1년간으로 변경

□ '적격거래'의 정의 신설 및 적격거래 실적 산정방법(제2조, 제3조 제4항)

— 적격거래란 기초수익률 산출 등에 활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(CD) 거래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함

- AAA등급 시중은행이 발행한 잔존만기가 45일 이상 165일 이내인 CD거래일 것
- 건별 거래량이 100억원 이상일 것

— 제출기관 선정시 적격거래의 실적을 50% 가중 할 수 있도록 개정

마.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(2022/12/27 제정 · 2023/1/1 시행)

1) 제정 이유

□ 2020년 5월부터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

— 금융위 · 금감원, '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(최종안)' 2020.4.27. 보도자료

— 협회와 금감원은 펀드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업계공동 TF를 운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

2) 주요 내용

□ (총론) 제정목적, 회계기준과의 관계, 평가 주기 등을 명시

— (제정목적)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

- 자본시장법규, 「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」 또는 「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」에서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(1.1.)

— (회계기준과의 관계) 가이드라인은 회계기준 일부를 구성하거나 해석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방법 중 하나를 제시한 것(1.2.)

— (평가 주기) 일반 사모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비시장성 자산은 최초투자 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고, 중요 사건 등 발생 시 수시 평가(1.4.)

-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
- 집합투자기구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,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,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고 추가 발행도 불가능한(폐쇄형&단위형)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인 경우
- 투자자 전원(평가기준일 기준)이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인 경우
- 평가비용이 공정가액의 20bp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시장성 자산의 경우
- 그 외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(판단 근거,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의사록 등 관련 기록 유지·보관 필요)

□ **(각론) 비상장주식, 사모사채, 메자닌 및 TRS의 평가에관한사항을명시**

— 각 유형별로 ① 평가사에 제공정보목록(2.1.1., 2.2.1., 2.3.2., 2.4.1.) ②표준 계약서 양식(2.3.3.(메자닌), 2.4.2.(TRS)), ③ 평가방법으로 구성

구분	공정가액 평가방법
비상장주식	현금흐름할인법이 기본이나, 재무정보가 부족한 초기기업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평가(2.1.2.) ※「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」(2020.1.)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· 한국회계기준원)을 참고하여 평가 가능
사모사채	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현금흐름할인법으로, 신용의 손상을 초래하는 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 손상차손법으로 평가(2.2.2.) * 사채의 약정된 현금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,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하여 평가하는 방식
메자닌	채권가치(표면이율, 잔존만기, 할인금리(신용등급) 등을 기초로 산정)와 옵션가치(주가, 변동성, 옵션행사가격 · 기간 등을 기초로 산정)를 합산(2.3.4.)
TRS	기초자산의 수익 · 이자 · 대차비용 · 환율 등을 고려하여 수취가치에서 지급가치를 차감하여 산정(2.4.3.)

□ (기타) 집합투자업자는 기존 공정가액 평가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정가액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(3.1.1.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